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July 8,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GloBE 모델 규칙에 대한 합의된 행정 지침 (Pillar Two)

2024 년 6 월 17 일, OECD/G20 이행체제 (Inclusive Framework)는 GloBE 모델 규칙에 대한 네 번째 행정지침(이하 '6 월 17 일 AG')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140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총 6 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이연법인세 부채에 대한 재계산 (DTL Recapture) 규정
2. GloBE 상 과 회계 장부액 (carrying value)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규정
3. 국가간 당기법인세 배분 (allocation of cross-border current tax)
4. 국가간 이연법인세 배분 (allocation of cross-border deferred tax)
5. 도관기업의 이익 및 세금 배분 (allocation of profits and taxes for flow-through entities)
6. 증권화 법인 (securitization vehicles) 관련 QDMTT 이슈

---

이번 행정지침은 GloBE 모델 규칙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환기 전용면제 규정 (Transitional CbCR Safe Harbour) 과의 관련성은 제한적입니다. 올해 추가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지침의 해설을 확장하는 내용과 더불어 새로운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호주 내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G20 Two-Pillar Solution 의 시행

### Pillar Two GloBE Rules 란?

글로벌 세원 잠식 방지 규칙 (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이하 'GloBE Rules')는 OECD/G20 IF 의 Two-Pillar Solution 에서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 그룹(multinational enterprises, 이하 'MNE 그룹')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의 이전을 막기 위해 최저한세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The GloBE Rules:

- 대규모 MNE 그룹이 운영 중인 각 관할권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인 15%가 적용되도록 준비합니다.
- OECD/G20 세원 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에 대한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이하 'IF')에 의해 개발된 모델 규정으로, 호주의 법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합니다.
- 2개의 연동된 규칙으로 구성됩니다:
  - 소득산입규칙 (Income Inclusion Rule, 이하 'IIR')은 주요 규칙으로, 다른 관할권에서 그룹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 다국적 모회사가 위치한 관할권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도록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
  - 비용공제부인규칙 (Undertaxed Payment Rule, 이하 'UTPR')은 backstop rule로써, 다른 관할권에서 그룹의 유효세율이 15% 미만이며 이익이 IIR에 따라 과세되지 않은 경우, 구성기업이 위치한 관할권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도록 부과
- 관할권들에게 국내 최저한세를 시행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관할권이 해당 관할권의 저과세 수익에 대해 IIR 및 UTPR에 우선하여 추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호주에서의 Pillar Two 시행

2023년 5월 9일, 정부는 2023-24년 Budget 에서 디지털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ECD/G20 Two-Pillar Solution 의 Pillar Two 의 주요 측면을 시행할 것을 발표했고 글로벌 최저한세와 국내 최저한세를 시행하기 위한 변경안을 제안했습니다.

---

---

## Australian Taxation Office (이하 'ATO') 시행 상태

이 조치는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첫 번째 제출 마감일 이전에 필요한 국내 보고서를 설계하고 조치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ATO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예정)하였습니다.

- 예산 발표된 Pillar Two GloBE 조치에 대한 예비 교육 및 인식 제공
- 새로운 글로벌 및 국내 최저한세 시행과 관련된 관리, 준수 및 시스템 영향에 대한 피드백 수렴

2024년 2월 1일부터, ATO는 MNE 그룹, 산업 단체, 자문사 및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Digital Service Providers, 이하 'DSPs')와 총 25차 상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DSPs와의 상담은 계속되고 있으며, 추가 Discussion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주요 상담 피드백 및 결과

- 규칙 시행 시점 및 준비 상태
- GloBE 규칙으로부터 발생하는 Compliance 문제
- GloBE 정보 신고서(GloBE Information Return, 이하 'GIR')에 필요한 데이터
- 데이터 포인트(data points)를 수집하는 데에 있어 잠재적인 기술적 어려움

이해 관계자들이 ATO의 행정 및 GloBE 시행과 관련해 제기한 다양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패널티
- 세이프하버(safe harbour) (여러 자문위원이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에서 개발한 세이프하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것을 지적)
- 호주 소득세 체계와의 상호 작용에 관한 해석 문제

경우에 따라 Compliance를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해 OECD/G20의 GloBE 규칙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 재무제표 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OECD/G20의 GloBE 규정, 해설 및 행정 지침에 규정된 것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자문위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법안 초안이 발표됨에 따라 ATO는 적절한 시기에 추가적인 공개 협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글로벌 및 호주 내 납세사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관련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Pillar2Project@ato.gov.au 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조심 2024 중 0439 (2024.05.30)

제목: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대가'로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 당하는지 여부 (기각)

###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 데이터센터 연결을 고도화하고 메모리 병목현상을 향상시키는데 특화된 반도체 및 지적재산권을 개발한 회사로 2010.1.19. 과 2013.7.1.에 각각 A(주)와 B(주) 및 그 자회사들(이하 "쟁점 법인들")에게 청구법인이 소유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들은 2018.11.14.부터 2023.8.14.까지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이에 청구법인은 2023.10.24. 와 2023.10.26. 에 쟁점사용료는 한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원천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특허권의 국내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11.24. 과 2023.12.4.에 각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쟁점

국내미등록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쟁점사용료는 국내 미등록특허권을 사용한 대가이므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용료에 해당하지 않는다.</li><li>-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의 경우, 대한민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대하여 또는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사용료의 원천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미조세조약상 국내 미등록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li><li>- 조세조약은 일정한 거래 등에 관하여 여러 국가의 과세권이 문제가 될 때 이들 국가의 과세권을 조정함으로써 이중과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국제거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조약은 독자적인 과세권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창설된 과세권을 배분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권</li></ul>

사용료는 일방 계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계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국내의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만 국내원천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내에서 과세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과 제14조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도 동 조항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은 '외국법인 혹은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59011 판결 등 다수).

- 대법원은 위 판단의 근거로 '한미조세조약의 문맥과 그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키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대법원 2007.9.7. 선고, 2005두8641 판결 등),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다. 따라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하였다.

- 이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에 대해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실시한 바 있다. 즉, 쟁점사용료는 쟁점법인들이 국내미등록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한미조세조약 제4 조 제1항,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과세될 수 없는 것이다.

## 2. 2008.12.26.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한미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본문은 2008.12.26.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외에 등록된 외국법인의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의 발생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각국의 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고, 조세조약이 국내세법과 달리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최종적인 과세권의 소재를 정해야 할 것이다.

- 한미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하여 이자, 배당, 사용료 등 종류별로 구분한 다음 각 소득별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에 과세권을 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한미조세조약상 위 소득의 원천을 구분짓는 구성 요소에 관한 특별한 정의규정이 없다면,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 제1문에 따라 계약국인 우리나라의 세법(「법인세법」 제93조)이 내포하는 의미에 따라 국내 원천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6.10. 선고, 2014 두39784 판결).

-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에 대한 정의와 제6조 제3항 소득의 원천에 대한 정의와 같이 한미조세조약은 '사용지 기준'만 규정하고 있고 '사용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조세조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내법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 2. 국내세법상 국내 미등록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구 「법인세법」은 특허권 등의 사용료에 관하여 조세조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특허권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여부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8.12.26.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되었다.

- 이후에도 「법인세법」 제93조에서는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쟁점사용료는 해당 특허권이 국내에 미등록되었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 미등록을 이유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이는 다수의 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3중7050, 2023.8.2. 외 다수)에서도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대가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도 불구하고 타당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규정은 한미조세조약상 사용료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없다.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 1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제119조 및 「법인세법」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일관하여 조세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특별한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18356 판결 등 다수). 나아가 조약해석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구속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당사자는 자신의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자신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하여 국내법 규정을 내세워 조약을 불이행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 비록 구 「국제조세조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이 2018.12.31. 자 법률 제16099호 개정을 통하여 삭제되었지만, 위와 같이 조약 해석에 관하여 우리나라를 구속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당사자는 자신의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자신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정하여 국내법 규정을 내세워 조약을 불이행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조세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특별한적인 지위는 인정되며,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 따라서 쟁점사용료의 원천지 결정은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동 조항에 따르면 미국법인이 대한민국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만 그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해 쟁점법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대법원 역시 같은 취지에서 '새로이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에 따라 국외에서 등록되었지만 국내에서 제조·판매에 사용된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두 42883 판결 등).

**3. 청구법인은 한미조세조약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이 분명하다.**

- 청구법인은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2 항 제1호 나목과 다목에 따라 최근 3년 감사보고서와 이사회 구성

<p>원 및 주주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u>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 점 역시 분명하다.</u></p> <p>- 나아가 <u>쟁점법인들이 쟁점사용료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당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한 점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을 쟁점사용료의 실질귀속자이자 미국 거주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u></p>	
---	--

**4) 판단**

- 청구법인은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과 관련한 쟁점사용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를 청구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서 3272, 2021.10.13., 조심 2019서3834, 2020.7.21. 외 다수 같은 뜻임).



**03**

**관세**

**자본거래법령 개정사항 및 관련 외국환거래법령 분석**

2024년 3월 5일부터 자본거래법령 개정으로 외국계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본사 주식을 국내 증권사에 이전할 필요 없이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 주요 규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 (해외시장거래 등) 제1항[2024.03.05 개정]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1.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닐 것
2. 외화증권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할 것

- 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 (해외시장 거래 등) 제3항

영 제1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득한 외화증권의 매도거래를 말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제1항 제10호(거주자의 증권취득)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제 9 장제 3 절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단서(신고예외 자본거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거래**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자본거래의 신고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수행하는 거래. 다만, 외환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급격한 외환유출입을 야기할 위험이 있는 거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
3. 해외에서 체재 중인 자의 비거주자와의 예금거래
4. 추가적인 자금유출입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변경 등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거래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2) 쟁점사항

---

최근 관세조사 중 외환조사 비중이 증가하면서 무역외지급, 상계, 제 3 자 지급 등 다양한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해외주식의 취득 및 매도에 관한 Compliance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1:** 외국계 기업 본지사 간 주식기준보상방법에 따른 주식의 취득 절차가 외국환거래법령을 준수하는가?
- **쟁점 2:** 외국계 기업 본지사 간 주식기준보상방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매도 절차가 자본시장법령을 준수하는가?

### 3) 검토

#### (1) 쟁점 1 에 대한 검토

외국계 기업이 제공하는 주식 보상에는 주로 RSU 및 ESPP 가 있습니다.

-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 회사가 특정 조건(예: 근무 기간)이 충족되면 일정 수량의 주식을 양도하는 형태의 주식보상방식
-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일정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급여를 공제하여 회사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 형태의 주식보상방식

이들은 외국환거래법 상, “외화증권”에 해당하여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 조항의 단서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거래”로서 외국환거래규정 제 7-31 조 제 1 항 제 10 호(거주자로서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자가 비거주자인 본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계기업의 한국법인에 근무하는 자가 외국계기업의 본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외화증권”의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2) 쟁점 2 에 대한 검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일반투자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 외화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란 자본시장법 제 8 조(금융투자업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투자업상 투자중개업 또는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로부터 교부되는 주식은 통상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외국증권사를 통해 교부됩니다.

---

개정 전	개정 후 (최종)
<p>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p> <p>⑥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결제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p>	<p><b>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b> ⑥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결제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해야 한다. <b>다만, 외화증권을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8. 27., 2021. 2. 9., 2024. 3. 5.&gt;</b></p> <p>1.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닐 것 2. 외화증권의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할 것</p>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반드시 투자중개업자(통상 국내증권사 등)에게 주식을 이전한 후 매도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하기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투자중개업자에 주식을 이전하지 아니하고도 외화증권을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①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닐 것
- ② 외화증권 취득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할 것**

먼저 외국계 기업 직원이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 취득하는 주식으로 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취득한 외화증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 ①에 부합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금융투자업 제 5-31 조 제 3 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 7-31 조 제 1 항에 의하면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자본거래로서 쟁점 1 에서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제 9 장제 3 절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②에 부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전 법령 Impact	개정 후 법령 Impact
국내 증권사 이전 후 매도	해외 증권사 즉시 매도 가능
과태료 처분 대상 O	과태료 처분 대상 X

관세조사 시 해당 부분의 법령 준수 여부로서 기초적인 확인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고서 확인 등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상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 억이 넘어야 함).

---

#### 4) 결론

최근 서울경제뉴스에 따르면 쿠팡 임직원들이 성과 보상으로 받은 주식을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매도해 무더기로 과태료 위기에 처했다가 상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세조사에서 외환조사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바, 해당 법령 개정에 따른 영향을 고객에게 안내하여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바로잡습니다]

※ 삼성 KPMG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뉴스레터 6 월 24 일자 3 번

관세 소식인 "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계획 사전 공개"는 KOTRA

강지숙 브뤼셀 무역관님이 작성하신 2024.6.14 일자 KOTRA 경제통상

리포트( <https://me2.do/GbD0INhg>) 를 인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처 미표기로

바로잡습니다.

---

# Key Contacts

##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